대법원 2026. 11. 18.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26도13473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가) 상고기각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관여가 문제된 사건]

◇1.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규정의 내용 및 취지, 2.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2항 제2호가 금지하는 정치관여 행위의 구성요소 및 판단 기준◇

1.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규정의 내용 및 취지

가. 국가정보원법 제3조는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국정원의 운영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에 따라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21조 제1항은 국정원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직원(이하 통틀어 '국정원장 등'이라 한다)이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이하 '정치관여 행위'라 한다)를 엄격히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법은 정치관여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두고 있다. 국정원 직원은 상급자로부터 정치관여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경우 이의를 제기하고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제11조 제3항). 국정원 직원이 해당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비밀엄수의무 적용이 배제되고, 국정원장은 신고 내용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된다(제11조 제4항, 제5항, 제6항). 이는 국정원 직원이 상급자의 정치관여 지시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궁극적으로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나.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으로서 그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국가 기밀에 대한 보안 업무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국가정보원법 제2조, 제4조). 직무의 특성상 비밀성이 요구되고, 원장을 정점으로 한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 아래 통일적·체계적인 직무수행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법적 지위와 직무수행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정원이 보유한 비공개정보와 조직적 영향력이 특정 정치세력과 결합하여 정치적 일탈로 이어질 위험이 상존한다.

국가정보원법이 정치관여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면서 벌금형이 없는 강력한 형사처벌 조항을 규정하는 한편, 상급자의 정치관여 지시에 대한 하급자의 이의제기 및 거부권 등

제도를 둔 것은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한 것이다.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규정은 국정원의 조직적·집단적 역량이 국내정치 개입에 전용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정보기관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2항 제2호가 금지하는 정치관여 행위의 구성요소 및 판단 기준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2항 제2호는 금지되는 정치관여 행위 중 하나로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국정원장 등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는 등의 정치관여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 직위를 이용하여'란 국정원장 등이 개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국정원장 등의 지위와 결부되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뜻한다. 국정원장 등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정치활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그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 등과 관련하여 국정원장 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는 등의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문제 되는 의견 또는 사실의 내용, 표현 방법, 공표의 경위,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거나 명시적인 가치판단적 내용 없이 사실관계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설명하는 사실관계의 성격, 행위의 목적과 동기, 전체적인 맥락 등에 비추어, 그 주된 취지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에 있다면,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도2741 판결 등 참조).

☞ 국정원장이었던 피고인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하여,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이 국정원 1차장에게 국군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 활동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사실 및 국정원 1차장이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을 부정하는 취지의 기자회견 및 인터뷰를 진행하고 문자메시지 및 서한문을 발송함으로써, 국정원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대통령 및 여당을 지지하는 의견을 유포하는 등 정치관여 행위를 하였다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임(나머지 공소사실은 생략)

☞ 원심은, ① 이 사건 기자회견 등은 피고인 개인 자격이 아닌 국정원장으로서의 지위

와 결부되어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직위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하고, ② 피고인이 주요 정치적 현안(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이례적인 방식(현직 국정원장이 기자회견, 인터뷰를 하는 등으로 개인 의견 공표)으로 허위의 내용(국정원 1차장이 피고인에게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 사실을 보고한 것은 사실임)을 공표하였는바, 그 경위에 비추어 이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동기와 목적에 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기자회견 등은 대통령 및 그에 동조하는 여당을 지지하는 의견을 유포한 것으로서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